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양 태 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양 태 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법제 비교연구 22-20-③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CONTENTS

Part I

서론 | 6

1. 연구의 배경 | 6
2. 연구의 범위 및 일본 부정수급 법제도의 개관 | 7

Part II

일본 법제상 부정수급의 개념 | 10

1. 금전적 급부의 종류 | 10
2. 부정수급의 개념 | 11
3. 우리나라 법제상 부정수급 개념과의 비교 | 15

Part III

일본 부정수급 관리 법체계 | 18

1.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제재의 강화 | 18
2. 조성금 및 급부금의 부정수급 관리
: 코로나 19 대응 관련 “지속화급부금” 사례 | 20
3.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 : 「보조금적정화법」 제17조 - 제20조 | 22
4. 사회보장급부금의 부정수급 관리 | 24

Part IV

일본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의 특징 | 28

1. 부정수급 대응 강화 추세 | 28
2.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의 특징 | 29

Part V

시사점 | 32

참고문헌 | 34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Par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일본 부정수급 법제도의 개관

Par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 최근 잇달은 사회경제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각국은 금융적 완화 해법에 더해 대규모의 재정적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고, 우리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하여) 또한 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대응을 위해 현금성 재정지출을 많이 단행하였음
 -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사태를 맞이하여 식량과 에너지 수급난이 더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었던 자금 회수 및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미국 연준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경제에 더욱 위기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
 - 이러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국면에서 기존에 위기해법으로 많이 활용했던 금융정책의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지출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아울러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법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의 경우 종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이 보조금 영역에서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던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으로 약칭한다)이 2019. 4. 16. 제정되어 2020. 1. 1. 시행되면서 보다 더 일반법, 기본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래 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게 되어 법제도적 체계는 최근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보완적 노력을 기울일 부분은 존재하므로 이미 마련된 제도운용의 실제 사례를 통한 보완과 더불어 비교법적 분석에 의한 제도적 보완 노력도 필요함

2. 연구의 범위 및 일본 부정수급 법제도의 개관

- ▶ 각국의 부정수급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적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하고, 그 법제도적 특징을 분석한 후 말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 다만 이 연구에서는 복지 제공에서 흔히 보이는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가 아닌 “금전적 형태의 직접적 지원에 관한 법제”에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 이러한 관점에서 개관할 때, 일본의 경우 부정수급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 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관하여 규율이 존재하여 왔고, 보조금 이외에 관해서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규율 내용이 개별 행정 영역별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그 주요한 것으로는 「보조금 적정화법」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취, 「생활보호법」상 보호비 부정수령,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부정수령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속화급부금/월세지원금부금/일시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들 수 있음
 - 그럼에도 그 개별 법률들의 내용 및 형태는 대체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제재의 수위가 각 영역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Part
II

일본 법제상 부정수급의 개념

1. 금전적 급부의 종류
2. 부정수급의 개념
3. 우리나라 법제상 부정수급 개념과의 비교

Part II

일본 법제상 부정수급의 개념

1. 금전적 급부의 종류

- ▶ 일본 법제상 공적 자금을 의한 대표적인 금전적 급부로는 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조성금, 급부금과 사회복지 목적의 사회보장급부금이 있음
- ▶ 보조금과 조성금 및 급부금의 구별¹⁾
 - 보조금(補助金)은 주로 경제산업성이 관리하고 있는 급부금으로 목적은 신규 사업과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보통 수개월 정도의 공모기간을 거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개인을 선별하여 지급하고 예산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함. 대표적으로 「보조금적정화법(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에 의해 관리되는 각종 ‘보조금’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보게 되는 타법에 규정된 203종의 ‘교부금’이 있음
 - 이에 반해 조성금(助成金)은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것을 정책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것을

1) 몇 가지 포털의 설명에 따른다. 대표적인 것으로 <https://www.kaonavi.jp/dictionary/subsidy/>; <https://j-net21.smrj.go.jp/qa/financial/Q1339.html>.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주로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고용관계 조성금과 주로 경제산업성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형 조성금으로 구분됨. 고용관계 조성금은 신규 고용촉진이나 정년연장 등 고용문제 해결이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성금이 있고 연구개발형 조성금으로는 개발비나 시장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있으며 그 종류는 3000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함. 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받게 되므로 지급이 용이함

- 한편 **급부금(給付金)**이란 특정 상태(예컨대 질병, 재난 등 사태를 말함)에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주로 감염병, 실업, 재난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사용됨. 대표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속화급부금/일시지원금/월차지원금/사업부활지원금 등을 들 수 있음. 긴급,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속성상 조성금처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급되므로 관리상으로는 조성금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부금**은 사회복지 목적의 급여이므로 경제적, 정책적 성격의 보조금, 조성금 등과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 일정 요건이 요구되고 현금성 급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하게 부정수급이 문제가 됨

- 사회보장급부금도 사회보험, 공적부조 등 내부적으로는 구분되는 유형이 있고, 보조금, 조성금 등과도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공적 자금에 의해 관리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속성 급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수급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생활보험법」상 생활보호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부 등을 들 수 있음

2. 부정수급의 개념

▶ 부정수급의 개념은 각 개별 행정영역과 개별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급여를 수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조성금이나 급부금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형태를 빌려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일정 조건의 충족을 서약하게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급부금의 반환 및 연체금과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면서 일종의 “증여계약”의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법령의 형태로 부정수급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속화급부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속화급부금 급부 규정(持續化給付金給付規程)」(개인사업자 대상. 2021.1.15.)²⁾을 살펴볼 수 있음. 이에 의하면 급부금은 국가의 지속화급부금사업의 예산액 범위에서 급부를 행하는 것으로서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급부액을 결정하는 “증여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제7조 제6항에서는 “부정수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성금이나 급부금 등에 두루 통용되고 있는 정의라 볼 수 있음

<p>제7조(선서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선서한 것이 아닌 때에는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p> <p>1. ... (생략)...</p> <p>7. 부정수급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사기, 협박, 증류 기타 형법(메이지40년 법률 제45호) 각 본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로 기본정보등에 허위 기입을 행하거나 거짓 증명을 행하는 것에 의해 본래 받을 수 없는 급부금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본정보등에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기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급부금을 반환할 것</p> <p>제9조(급부금의 급부) ① 급부금은 국가의 지속화급부금사업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급부를 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지속화급부금사업의 예산액 범위내에 한정되고 신청자의 신청으로 성립하되 사무국 심사를 거쳐 장관이 급부액을 결정하는 증여계약이다.</p> <p>② ... (생략)</p>	<p>(宣誓事項)</p> <p>第7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宣誓した者でなければ、給付金を給付しない。</p> <p>一. ... (省略)...</p> <p>七. 不正受給（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詐欺、脅迫、贈賄その他の刑法（明治40年法律第45号）各本条に規定するものをいう。）に触れる行為のほか、刑法上の犯罪を構成するに至らない場合であっても、故意に基本情報等に虚偽の記入を行い、又は偽りの証明を行うことより、本来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給付金を受け、又は受けようとするをいう。ただし、基本情報等に事実と反する内容の記入があった場合であっても、これが故意によらない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不正受給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する。以下同じ。）等が発覚した場合には、第10条の規定に従い給付金の返還等を行うこと</p> <p>(給付金の給付)</p> <p>第9条 給付金は、国の持続化給付金事業の予算額の範囲内で給付を行うものであり、国の持続化給付金事業の予算額の範囲内に限り、申請者からの申請で成立し、事務局の審査を経て長官が給付額を決定する贈与契約である。</p> <p>2. ... (생략)...</p>
---	--

2)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법적 성질은 경제산업성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보인다. (https://www.meti.go.jp/covid-19/pdf/kyufukitei_zatsukyuyo2.pdf?0114) 이하의 내용은 이 규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 이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란 수단적 요소로서 ①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 또는 ②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도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입하거나 허위 증명을 하여, 결과적 요소로서 ‘본래 받을 수 없는 급부금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허위정보 기입이나 허위 증명의 경우에도 고의가 아닌 경우는 배제하고 있고, 또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각 본조에 해당하는 것만을 지시하고 있어 다소 해석이 넓어질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해 주고 있음

▶ 이에 반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보조금적정화법」은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보조금등 교부의 부정한 신청 및 보조금등의 부정한 사용의 방지(補助金等の交付の不正な申請及び補助金等の不正な使用の防止)”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부정수급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보조금적정화법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p>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보조금등 교부의 신청, 결정등에 관한 사항 기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의해 <u>보조금등 교부의 부정한 신청 및 보조금등의 부정한 사용의 방지</u> 기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 및 보조금등 교부결정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생략)...</p> <p>제17조(결정의 취소) ① 각성청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보조사업자등에 관해 보조금등의 교부 결정 내용 또는 그에 부속한 조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기초한 각성청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등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この法律の目的)</p> <p>第一条 この法律は、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決定等に関する事項その他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に関する基本的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の不正な申請及び補助金等の不正な使用の防止その他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並びに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適正化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省略)...</p> <p>(決定の取消)</p> <p>第十七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が、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をし、その他補助事業等に関して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又はこれに附した条件その他法令又はこれに基く各省各庁の長の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p>

- 그럼에도 제1조 목적에서 명확히 “부정한 신청 및 부정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내걸고 있는 이상, 제17조의 내용은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또한 지급요건이 조성금이나 급부금보다 까다로운 점을 고려할 때 앞서 급부금에 대해 설명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여기서도 부정수급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부정신청'은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부속 조건이나 법령에 위반한 것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렇게 본다면 제17조 제1항은 ① 용도 외 사용 뿐 아니라 ② 부정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도 모두 부정수급의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①번 유형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한편 **사회보장급여금**에 대해서도 조성금/급여금의 경우와 유사한 개념규정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활보호법」상 보호비의 부정수급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p>제78조 ① 사실과 다른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자가 있는 때에는 보호비를 지급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비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하는 외에 그 징수할 액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얻은 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의료, 개호 또는 조산 혹은 시술의 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불을 받은 지정의료기관, 지정개호기관 또는 지정조산기관 혹은 지정시술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비용을 지급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지급한 액 가운데 반환시켜야 할 액을 그 지정의료기관, 지정개호기관 또는 지정조산기관 혹은 지정시술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외에 그 반환시켜야 할 액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얻은 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업근로자립급여금 혹은 진학준비급여금의 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취업근로자립급여금 혹은 진학준비급여금을 지급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비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하는 외에 그 징수할 액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얻은 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第七十八條 不実の申請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保護を受け、又は他人をして受けさせた者があるときは、保護費を支弁した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長は、その費用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者から徴収するほか、その徴収する額に百分の四十を乗じて得た額以下の金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よつて医療、介護又は助産若しくは施術の給付に要する費用の支払を受けた指定医療機関、指定介護機関又は指定助産機関若しくは指定施術機関があるときは、当該費用を支弁した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長は、その支弁した額のうち返還させるべき額をその指定医療機関、指定介護機関又は指定助産機関若しくは指定施術機関から徴収するほか、その返還させるべき額に百分の四十を乗じて得た額以下の金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偽り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就労自立給付金若しくは進学準備給付金の支給を受け、又は他人をして受けさせた者があるときは、就労自立給付金費又は進学準備給付金費を支弁した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長は、その費用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者から徴収するほか、その徴収する額に百分の四十を乗じて得た額以下の金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p>
--	---

- 위 제7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문구는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제1항, 제2항, 제3항의 차이는 부정수급의 개념 차이가 아니라 부정수급에 의해 제재를 받는 대상과 급부의 종류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제78조 제1항은 보호비를 부정수급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제2항은 의료, 개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정수급의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제3항은 취업근로자립급부금, 진학준비급부금을 부정수급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각각 정하고 있음

3. 우리나라 법제상 부정수급 개념과의 비교

- ▶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 관리법’)」이 이를 정하고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부정청구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정하고 있음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p>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중략)...</p> <p>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p> <p>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p> <p>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p> <p>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p> <p>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p>

- 양자는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부받은 경우 ②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고, 앞서 살펴본 일본의 ‘부정수급’ 개념과도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다만 「공공재정환수법」상의 “부정청구등” 개념 속에는 위 ①, ②의 것 외에도 ③ 과다청구와 ④ (어떠한 사유로든)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범위가 넓고 일반적이라는 차이가 있음
- 앞서 살펴본 「지속화급부금 급부 규정(持續化給付金給付規程)」에 의하면 허위정보기입이나 허위증명의 경우에도 고의로 행한 경우만을 부정수급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재정환수법」은 일단 과실로 인한 것도 모두 포함하면서도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대한 규정을 통해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적으로 제재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부정청구등이 청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재량적 감면은 다소 과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행정청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량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³⁾

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비례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① ...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art
III

일본 부정수급 관리 법체계

1.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제재의 강화
2. 조성금 및 급부금의 부정수급 관리
: 코로나 19 대응 관련 “지속화급부금” 사례
3.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
: 「보조금적정화법」 제17조 - 제20조
4. 사회보장급부금의 부정수급 관리

Part III

일본 부정수급 관리 법체계

1.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제재의 강화

- ④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는 문제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고 이에 반응하여 점차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
- ④ 일례로 조성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으로서 2019년 4월부터 “조성금 부정수급 엄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⁴⁾ :
 - 20% 상당의 위약금 부과 : 부정수급 받은 조성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이전까지는 원본과 연체금만 청구되었으나, 2019. 4. 부터는 부정수급에 의해 반환해야 할 액수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음
 - 부지급 기간 및 제재 대상 확대 : 부정수급이 발각된 경우 이전까지는 3년간 조성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2019. 4. 부터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음. 또한 이전까지는 부정신청한 사

4) 이하의 내용은 다음 정보에 의한 것이다 : (조성금 팁 사이트- “고용조정조성금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

<https://joseikin-tips.com/%E3%80%90%E9%9B%87%E7%94%A8%E8%AA%BF%E6%95%B4%E5%8A%A9%E6%88%90%E9%87%91%E3%80%91%E4%B8%8D%E6%AD%A3%E5%8F%97%E7%B5%A6%E3%81%97%E3%81%9F%E3%82%89%E3%81%A9%E3%81%86%E3%81%AA%E3%82%8B%EF%BC%9F/>

업주만이 반환청구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부정수급에 관여한 사회보험노무사와 대리인등도 연대책무자로서 반환청구반도록 되었음

- **사업주 이름 등 명단 공표** : 중대하거나 악질인 건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정보들이 공개됨. 이러한 건으로 정보가 게재될 경우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크게 실추될 수 있으므로 명단 공표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물론 기업으로서는 회사명을 바꾸고 대표자를 교체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이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완벽한 회피수단이 될 수는 없음

- 사업주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업소 명칭과 소재지
- 사업의 개요
- 부정수급한 조성금의 명칭과 금액 등
- 부정(不正)의 내용
- 부정(不正)에 관여한 대리인과 사회보험노무사등의 명칭과 소재지 등

- **최악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부정수급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격이나 요건을 기망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조성금을 교부하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일본 형법 제246조) 다만 이러한 처벌의 가능성은 종래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새롭게 강화된 제재는 아님

- ▶ <조성금 부정수급 엄벌화 방침>은 2019. 4. 1. 부터 조성금 및 급부금에 대하여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적정화법」이 별도로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급부금에 관해서도 개별법별로 독자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들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일례로 「생활보호법」상 보호비 부정수급에 대하여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하여 종전에 벌금 30만엔 이하 부과 가능하던 것이 2014년 벌금액 100만엔 이하로 인상된 것을 들 수 있음

- ▶ 이하에서는 조성금 및 급부금, 보조금, 사회보장급부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제재의 구체적 유형을 그 주요한 개별법령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조성금 및 급부금의 부정수급 관리 : 코로나 19 대응 관련 “지속화급부금” 사례

- 코로나 19 사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화급부금, 월세지원급부금, 일시지원금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급부금이 지급되었고, 가장 최근의 사례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관련 급부금의 하나로 “지속화급부금”이 있고 이것의 지급 절차와 내용을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속화급부금 급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알 수 있음
- 「지속화급부금 급부 규정」(주로 개인사업자 대상. 2021. 1. 15)⁵⁾은 총12개 조를 통해 지속화급부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급부대상자는 일정 요건과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급부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결정하여 중소기업청 사무국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급부금은 사무국 심사를 거쳐 경제산업성 장관이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증여계약”의 형태로 지급됨
- 이에 따라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급부금을 급부한다는 서약을 하게 되므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발각되면 사후적으로 급부금을 반환해야 함
- 특히 규정 제10조는 급부금의 부정수급등이 있을 경우 그 대응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p>제10조(급부금에 관한 부정수급에의 대응) ① 신청자의 신청이 급부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는 불급부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의심되는 때에는 [경제산업성] 장관은 사무국을 통해 다음 각호의 대응을 한다.</p>	<p>(給付金に係る不正受給等への対応) 第10条 申請者の申請が給付要件を満たさないこと又は不給付要件に該当することが疑われる場合は、長官は、事務局を通じ、次の各号の対応を行う。</p>
---	---

5) 앞의 각주 2)의 자료와 같은 것이다. 그보다 이전 것들, 예컨대 (중소법인등 대상. 2020. 8.1.) 등도 있으나 내용은 거의 같으므로 가급적 최신의 것으로 살펴본다.

<p>1. 제출된 기본정보등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수상한 점이 보이는 경우등에는 조사를 개시한다. 신청자등의 관계자에 대한 관계서류의 제출지도, 사정청취, 현장검사등의 조사는 사무국 및 장관이 위임 또는 준위임한 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조사가 끝난 뒤 당해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또한 이미 급부한 급부금에 대해 조사를 행하는 때에도 같다.</p> <p>2. 사무국등의 조사 결과 신청자의 신청이 급부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는 불급부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장관은 당해신청자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사무국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신청자에 대하여 급부금에 관한 장관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함과 급부금 반환에 관계된 통지를 행한다.</p> <p>② 급부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의심되는 때에는 장관은 사무국을 통해 전항의 대응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응을 행한다.</p> <p>1. 부정수급을 행한 신청자는 전항 제2호의 급부금의 전액에 부정수급을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연3%의 비율로 산정된 연체금을 부가하고 이것의 합계액에 그 2할에 상당하는 액을 부가한 액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며 사무국은 당해신청자에 대하여 이러한 금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행한다.</p> <p>2. 부정수급이 발간된 때에는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상호(商號)·별칭·성명등의 공표를 행한다.</p> <p>3. 사무국은 부정(不正)의 내용에 따라 부정하게 급부금을 수급한 신청자를 고발한다.</p> <p>③ 사무국이 신청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급부금을 신청자를 대신하여 장관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신청자로부터 반환 받은 건수 및 금액등의 정보를 양식4에 따라 장관에 보고한다.</p> <p>④ 장관이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무국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⑤ 전항에 기하여 급부금의 반환기한은 신청자와의 증여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의 익일부터 이것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당해 미반납금액에 대해 재무대신이 결정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p>	<p>一 提出された基本情報等について審査を行い不審な点がみられる場合等に調査を開始する。申請者等の関係者に対する、関係書類の提出指導、事情聴取、立入検査等の調査については、事務局及び長官が委任又は準委任した者において行うことを原則とし、これらの調査を行った後、当該関係者に対する対処を決定する。なお、既に給付した給付金について調査を行う場合も同様とする。</p> <p>二 事務局等の調査の結果、申請者の申請が給付要件を満たさないこと又は不給付要件に該当す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長官は、当該申請者との間の贈与契約を解除し、事務局は、長官の指示に従い、当該申請者に対し、給付金に係る長官との間の贈与契約を解除し、給付金の返還に係る通知を行う。</p> <p>2 給付金の不正受給に該当することが疑われる場合は、長官は、事務局を通じ、前項の対応に加え、次の各号の対応を行う。</p> <p>一 不正受給を行った申請者は、前項第2号の給付金の全額に、不正受給の日の翌日から返還の日まで、年3%の割合で算定した延滞金を加え、これらの合計額にその2割に相当する額を加えた額を支払う義務を負い、事務局は当該申請者に対し、これらの金員を請求する旨の通知を行う。</p> <p>二 不正受給が発覚した場合には、事務局は原則として申請者の屋号・雅号・氏名等の公表を行う。</p> <p>三 事務局は、不正の内容により、不正に給付金を受給した申請者を告発する。</p> <p>3 事務局は、申請者から返還を受けた給付金を、申請者に代わって長官に返還する場合には、申請者から返還を受けた件数及び金額等の情報を様式4により長官に報告する。</p> <p>4 長官は、前項により報告を受けた場合には、事務局に対して返還を命ずるものとする。</p>
--	---

<p>⑥ 급부금은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급부액을 결정하는 증여계약이고, 원칙적으로 민법(메이지29년 법률제89호)이 적용되어 급부·불급부의 결정,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쇼와37년 법률제160호)상의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불급부결정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신청자등의 불복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적부에 대한 재조사를 행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도모한다.</p> <p>(참고로 [] 문구는 문맥을 고려하여 필자가 삽입한 것이다)</p>	<p>5 前項に基づく給付金の返還期限は、申請者との贈与契約の解除がなされた日から20日以内とし、期限内に納付がない場合には、その期限の翌日からこれを返還する日までの期間に応じ、当該未返納金額に対し、財務大臣が決定する率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6 給付金は、事務局の審査を経て長官が給付額を決定する贈与契約であり、原則として民法（明治29年法律第89号）が適用され、給付・不給付の決定、贈与契約の解除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昭和37年法律第160号）上の不服申立ての対象とならないが、不正受給による不給付決定又は贈与契約の解除に対し、申請者等から不服の申出があった場合は、適宜再調査を行うなど、必要な対応を図る。</p>
---	---

- 이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2019년 4월부터 강화된 “조성금 부정수급 엄벌화 방침”에 제시된 대로의 대응이 ‘부지급 기간 규정’(예컨대 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 있음. 여타의 조성금과 달리 지속화급부금은 일시적 대응이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임
- 그 내용은 제10조 제2항 1-3호가 정하고 있는데, ① 연3%의 연체금과 20%의 위약금 부가 ② 명단 공표 ③ 부정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함이 그것임

3.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 「보조금적정화법」 제17조 - 제20조

-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적정화법」 제17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음

보조금적정화법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p>제4장 보조금등의 반환 등</p> <p>제17조(결정의 취소) ① 각성청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보조사업자등에 관해 보조금등의 교부 결정 내용 또는 그에 부속한 조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기초한 각성청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등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② ... (생략) ...</p>	<p>第四章 補助金等の返還等 (決定の取消)</p> <p>第十七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が、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をし、その他補助事業等に関して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又はこれに附した条件その他法令又はこれに基く各省各庁の長の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p> <p>2...(省略)...</p>

제18조(보조금등의 반환) 각성청의 장이 보조금등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보조사업등의 당해 취소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 (생략) ...

제19조(가산금 및 연체금) ① 보조사업자등은 제17조 제1항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 받은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명령에 관계되는 보조금등의 수령일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대로 당해보조금등의 액수(그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10.95%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받고 이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납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그 미납부액에 연 10.9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성청의 장은 전2항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가산금 또는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등의 일시정지등) 각성청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받고 당해보조금등, 가산금 또는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조금등이 있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당해보조금등과 미납부액을 상계할 수 있다.

(補助金等の返還)

第十八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取り消した場合において、補助事業等の当該取消に係る部分に関し、すでに補助金等が交付されているときは、期限を定めて、その返還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 (省略) ...

(加算金及び延滞金)

第十九条 補助事業者等は、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又はこれに準ずる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処分に関し、補助金等の返還を命ぜられ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命令に係る補助金等の受領の日から納付の日までの日数に応じ、当該補助金等の額（その一部を納付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後の期間については、既納額を控除した額）につき年十・九五パーセントの割合で計算した加算金を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補助事業者等は、補助金等の返還を命ぜられ、これを納期日までに納付しなかつ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期日の翌日から納付の日までの日数に応じ、その未納付額につき年十・九五パーセントの割合で計算した延滞金を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各省各庁の長は、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加算金又は延滞金の全部又は一部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他の補助金等の一時停止等)

第二十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が補助金等の返還を命ぜられ、当該補助金等、加算金又は延滞金の全部又は一部を納付し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対して、同種の事務又は事業について交付すべき補助金等があるときは、相当の限度においてその交付を一時停止し、又は当該補助金等と未納付額とを相殺することができる。

- 이에 따르면 명확히 부정수급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규율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함과 동시에 ① 연체금 연10.95% ② 부가금 연10.9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성금/금부금과는 다소 다른 수위의 제재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조성금의 경우 신청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더 높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심사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재의 수준을 조금 낮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요건의 엄격함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적으로 규율하는 모습은 제도의 비례적 합리성을 충족하므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연체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보조금 반환의 경우가 더 이율이 높지만 이것은 단순히 빠른 반환을 강제하는 의미의 것으로 보임

4. 사회보장급부금의 부정수급 관리

(1) 보호비의 부정수급 관리 : 「생활보호법」 제78조 및 제85조

- ▶ 보호비는 공적부조금으로 사회보장급부금임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속성상 보조금보다는 “조성금”과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음. 그러나 급부자체가 계속적 성격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부정수급 관리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 그러한 강화의 일환으로 2014년에 실제로 부정수급 발각시 벌금액 상한을 3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인상하는 개정을 단행한 바 있음⁶⁾
 - 그 외에도 ① 복지사무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취업근로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가능하도록 하고 관공서의 회답의무를 신설하였음), ② 100분의40을 곱한 금액의 부가금을 새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였음. 계속적 성격의 것임을 감안하여 부가금 비율이 여타의 것보다 높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형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

6)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있는 2014년 생활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설명자료에 따름: “生活保護法改正法の概要”.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topics/dl/tp131218-05.pdf)

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중한 사기죄로만 처벌될 여지가 있음

<p>생활보호법 (쇼오와 25년 법률 제144호)</p>	<p>生活保護法 (昭和二十五年法律第四百四十四号)</p>
<p>제78조 ① 부실 신청(不実の申請)= 사실과 다른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비를 지급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비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자로부터 징수하는 외에 그 징수할 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거짓 기타 부정 행위에 의해 의료, 간호 또는 조산 또는 시술 급부에 필요한 비용 지불을 받은 지정의료기관, 지정개호기관 또는 지정조산기관 또는 지정시술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비용을 지급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지급한 액 가운데 반환시켜야 할 액을 그 지정 의료기관, 지정개호기관 또는 지정조산기관 또는 지정 시술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외에 그 반환시켜야 할 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업근로자립급부금 또는 진학준비급부금의 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취업근로자립급부금 또는 진학준비급부금을 지급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비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자로부터 징수하는 외에 그 징수할 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생략)...</p>	<p>第七十八条 不実の申請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保護を受け、又は他人をして受けさせた者があるときは、保護費を支弁した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長は、その費用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者から徴収するほか、その徴収する額に百分の四十を乗じて得た額以下の金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よつて医療、介護又は助産若しくは施術の給付に要する費用の支払を受けた指定医療機関、指定介護機関又は指定助産機関若しくは指定施術機関があるときは、当該費用を支弁した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長は、その支弁した額のうち返還させるべき額をその指定医療機関、指定介護機関又は指定助産機関若しくは指定施術機関から徴収するほか、その返還させるべき額に百分の四十を乗じて得た額以下の金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偽り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就労自立給付金若しくは進学準備給付金の支給を受け、又は他人をして受けさせた者があるときは、就労自立給付金費又は進学準備給付金費を支弁した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長は、その費用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者から徴収するほか、その徴収する額に百分の四十を乗じて得た額以下の金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省略)...</p> <p>(罰則)</p>
<p>제85조(벌칙) ① 부실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에 정한 조문이 있는 때에는 형법에 따른다.</p> <p>②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업근로자립급부금 또는 진학준비급부금의 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에 정한 조문이 있는 때에는 형법에 따른다.</p>	<p>第八十五条 不実の申請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保護を受け、又は他人をして受けさせ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ただし、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に正条があるときは、刑法による。</p> <p>2 偽り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就労自立給付金若しくは進学準備給付金の支給を受け、又は他人をして受けさせ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ただし、刑法に正条があるときは、刑法による。</p>

(2) 실업급부의 부정수급 관리 : 「고용보험법(雇用保険法)」 제10조의4

- 실업급부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서 지출하는 급부로 동법상 “실업등급부”는 구직자급부, 취직촉진급부, 교육훈련급부 및 고용계속급부를 말하는 것임 (제10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4는 실업등급부의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지급받은 액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으로서 2배까지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p>제10조의4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실업등급부의 지급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자에 대하여 지급한 실업등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또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지급을 받은 실업등급부의 액의 2배에 상응하는 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第十条の四 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より失業等給付の支給を受けた者がある場合には、政府は、その者に対して、支給した失業等給付の全部又は一部を返還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また、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より支給を受けた失業等給付の額の二倍に相当する額以下の金額を納付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p>

Part
IV

일본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의 특징

1. 부정수급 대응 강화 추세
2.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의 특징

Part IV

일본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의 특징

1. 부정수급 대응 강화 추세

- ▶ 일본의 경우 보조금, 조성금, 급부금의 종류가 수천종이 넘는 현실, 그리고 조성금이나 급부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급부를 얻는다는 점 때문에 부정수급 건수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임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지속화급부금, 월세지원급부금에 대한 부정수급은 범죄임을 경고하면서 자주적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편 실제 반환받은 실적을 공시하고 있음⁷⁾
 - 지속화급부금의 경우 2022. 9. 29. 기준으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신고 건수가 23,252건이고, 반환완료 건수가 16,645건으로 그 반환완료금액은 약176억6200만엔에 달하고 있음
 - 월세지원급부금의 경우는 2022. 9. 29. 기준으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신고 건수가 1,246건, 반환완료 건수가 1,166건이고 그 반환완료금액은 약9억6200만엔이라고 함

7) 이하의 내용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사이트 게시 자료에 따른 것이다.
(https://www.meti.go.jp/covid-19/kyufukin_fusei.html)

- ▶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의 다발성, 빈발성에 대응하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방향은 ① 제재 부가금을 강화하고 ② 명단공표를 활용하며 아울러 ③ 형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음

2.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의 특징

- ▶ 일본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재부가금이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부정수급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생활보호비의 부정수급처럼 직접 형벌이 규정되고 강화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형벌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성금 등 공공재정의 지출 문제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공재정의 건전한 쓰임과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금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강화는 공공재정을 지키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재부가금의 보편적 사용 및 강화 경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아울러 제재부가금이 각 영역별로 차등화되어 규정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대로 제재부가금의 규율은 보조금 반환의 경우 10.95%에서 실업급여의 경우 200%까지 매우 다양한 비율로 규정되어 있음
- 특히 보조금과 조성금/급부금의 사례처럼 요건의 엄격함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부가금 비율이 규정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비례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각 행정 영역별로 어떤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지, 어떤 정도의 제재수준이 효과적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의 5배 한도 규정은 그 수준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임

- ▶ 현실적으로 부정수급은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사후적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수 밖에 없는데, 일본에서는 각종 회계감사 제도를 통해 의심, 지적을 통해 조사되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권한의 강화 및 기관간 상호회담의무의 설정 등 조사-검사/감사 체계의 정비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현실적으로 행정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수시 투입되는 것은 업무에 비효율적이므로 각종 감사 제도의 중복적 정비 및 필요시 수시 조사 가능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Part

V

시사점

Part V

시사점

1. 일본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행정 법 분야에 따라 법제적으로도 분산된 대응을 보이고 있음
2. 그럼에도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제재의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그러한 주요한 것으로서 ① 제재부가금의 강화 ② 명단공표 제도 활용 ③ 형벌 강화 등을 거론할 수 있음
3. 공공재정 지출의 적절한 사용 및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역시 “부정수급금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음. 형벌이나 명단공표도 일정한 사회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재정의 충실한 회복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정 관리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일본 법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의 점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제재부가금이라도 그것이 너무 과중할 경우 오히려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재의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일본 사례에서는 제재부가금의 수준이 10.95% ~ 200%까지임에 반하여 우리 「공공재정환수법」 상으로는 500%까지이므로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각 영역별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차등화하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재정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통된 과제상황으로 보이지만, 부정수급 방지는 사전적 요건 설정보다는 역시 사후적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조사-감사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정수급 방지의 과제를 오로지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조사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감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를 통한 의심 내지 지적이 있을 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한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관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 및 국민소송/주민소송 제도를 전체적으로 잘 결합해 나감으로써 공공재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전주열·김동석,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한국법제연구원, 2018.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補助金適正化法」

「生活保護法」

「雇用保険法」

「持続化給付金給付規程」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

일본 e-GOV 법령검색 사이트 : (<https://elaws.e-gov.go.jp/>)

재정법제 비교연구 22-20-③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재정법제 비교연구 22-20-③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일본 -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
TEL (044) 861-0300 FAX (044) 868-9915

